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이하 "회사"라 한다)가 발주하는 설비 또는 공사의 거래상대방 선정 시 바람직한 거래 방법, 기준 등을 제시하여 부당한 계열사 지원행위를 예방하고 비계열 독립기업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열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 14 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포스코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를 말한다.
2. "포스코 기업집단 소속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 14 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포스코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를 말한다.
3. "비계열 독립기업"이란 포스코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말한다.
4. "통합 발주"란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을 상대로 일괄적으로 계약을 발주하고, 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관련 상품,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달하도록 하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
5. "발주 패키지"란 사업을 경제성과 사업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원활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부서에서 검토한 발주 단위를 말한다.
6. "내부 거래"란 포스코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설비 또는 공사를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7. "발주 가이드"란 회사가 설비 또는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부당한 내부거래를 방지하고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발주를 확대하기 위한 거래유형과 판단기준을 말한다.

제 3 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발주하는 모든 설비 또는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해야 하는 등 거래상대방 선정 방식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경우 이 지침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 4 조(지침의 성격) 이 지침은 회사의 거래 상대방 선정이나 계약과 관련된 모범적인 행위와 거래기준으로서 일반적인 성격의 권고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제 2 장 기본 원칙

제 5 조(발주의 기본 원칙) 회사의 설비 또는 공사 발주는 경쟁입찰 방식에 따르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수의계약은 이 지침과 「계약지침(I21101)」에 따라 긴급성, 보안성, 효율성 등 경영상 필요가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 6 조(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 금지) 회사는 설비 또는 공사 발주의 거래상대방 선정과 계약과정에서 객관적 업무수행 능력이나 거래조건 등과 무관하게 소속 계열사 또는 포스코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라는 이유로 특정 회사를 차별적으로 우대하거나 지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7 조(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사업 기회 개방) 회사는 원칙적으로 경쟁 방식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선정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우수한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여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역량 있는 비계열 독립기업에 충분한 사업 기회가 개방될 수 있도록 한다.

제 8 조(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회사는 거래상대방 선정과 거래조건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관련 중요자료는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제 3 장 경쟁 입찰의 활성화

제 9 조(발주 방법과 절차의 결정)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과 같은 발주 방법 결정을 검토할 때 세부 업무절차는 이 지침과 「계약지침(I21101)」에 따른다.

제 10 조(경쟁입찰 활성화가 필요한 특정 분야의 지정) 설비 또는 공사의 발주에 있어서 제 11 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경쟁입찰 활성화가 필요한 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위 설비로부터 분리 가능한 단순 제작 또는 전문 Maker 성 설비
2. 공장 시설, 연구개발 시설 등 영업 비밀과 직결되는 설비 또는 공사 외에 일반적인 설비 또는 공사
3. 전체적인 투자사업의 공기 리스크가 적은 독립 개소 건설공사

제 11 조(수의계약이 가능한 예외 사유) 설비 또는 공사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예외 사유는 이 지침과 「계약지침(I21101)」에 명시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장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직접 발주 확대

제 12 조(비계열 독립기업 직접 발주 분야 발굴) 회사는 설비 또는 공사 발주 거래 상대방 선정 시 중소기업 등 비계열 독립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직접 발주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제 13 조(통합발주 시 세부 업무 내용의 점검) 회사는 관련 업무를 수주하여 실질적인 업무는 중소기업 등 비계열 독립기업에 일괄적으로 재위탁하면서 특별한 역할 없이 거래단계를 추가하여 과도한 이익을 수취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상대방의 실질적 업무수행 내용 또는 대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제 14 조(직접 발주 활성화가 필요한 특정 분야의 지정) 회사는 설비 또는 공사에 있어서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직접 발주 활성화가 필요한 특정 분야를 제 10 조 이외에 아래 각 호를 추가로 지정하고 직접 발주한다.

1. 비계열사/중소기업 직발주 품목으로 분류된 설비 60 개 품목
2. 중견기업 육성이 필요한 품목
3. Benefit Sharing 과제 수행 품목 또는 과제수행 이후 시제품 정산계약일로부터 3 년내 확대적용 품목 (단, 국산화는 5 년내 확대적용 품목)
4. 설비구매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계열사 대비 경쟁력이 높을 뿐 아니라 계열사 발주 시에도 원활한 투자사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5. 장기적인 비계열사 육성 차원에서 계열사와 컨소시엄 계약으로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6. 수배전반(10kV 이하), 스틸하우스, 스틸 Grate 등의 품목. 단, 장애인 기업 및 사회적 기업으로 우선 발주를 추진하되, 필요시 발주물량 및 대상 품목은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 발주기준은 장애인 기업/사회적 기업과 맺은 협약서 또는 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른다.
7. 기타 경제성, 효율성, 동반성장 등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제 5 장 설비발주 판단 및 구매 절차

제 15 조(비계열사,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기업 직 발주 설비 품목과 공사 분리) ① 발주 판단 시 비계열사,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기업 직 발주 설비 품목 또는 공사는 분리 발주를 원칙으로 하여 별도 발주 패키지로 편성하고, 해당 소싱그룹 또는 해당 공급사를 대상으로 발주를 추진한다.

② 중소기업 직 발주 품목으로 분류된 설비 품목 또는 공사, Benefit Sharing 과제수행 품목, 과제수행 이후 시제품 정산 계약일로부터 3 년 내 확대 적용 품목은 비계열사, 중소기업에 직발주한다.

③ 10kV 이하 수배전반, 스틸하우스, 스틸 Grate 등의 품목은 장애인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에 우선 발주를 추진하며 대상 품목은 조정할 수 있다. 세부 발주기준은 장애인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과 맺은 협약서 또는 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른다.

제 16 조(설비발주 판단 1 단계: 계열사, 외부거래의 발주 판단) ① 직발주 품목 분리 등의 절차 완료 후에도 발주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발주패키지에 대해서는 별표 1 의 '발주 가이드'에 따라 발주사 아이템의 중요성과 수주사 보유 역량을 조사하여 계열사 수의계약, 조건부 수의계약, 외부 발주 등 발주 방법을 판단한다.

② 외부 발주 시 세부 발주방안은 이 지침과 「계약지침(121101)」에 따라 판단한다.

③ 외부발주 판단 후, 단일 공급사임을 사유로 수의 발주가 예상되는 경우 추가적인 공급사 조사 또는 사양변경 등을 검토하여 가급적 복수 공급사를 대상으로 경쟁 발주하도록 한다. 단,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의 발주가 불가피할 경우 이를 목록으로 만들어 관리하고 향후 복수 공급사 발굴을 위해 구매 부서와 발주 부서 간에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 17 조(설비발주 판단 2 단계: 계열사와 거래 시 추가 분리발주 판단) 발주 판단 1 단계에서 계열사에 수의 또는 조건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경우 발주판단 2 단계에서 발주사 관리역량과 수주사 보유역량을 조사하여 분할, 컨소시엄, 일괄 발주 등 분리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제 18 조(추가 분리발주 여부 확인) 설비발주 판단 2 단계에 따라 발주 판단을 완료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구매부서의 의견수렴 결과 시장 상황, 최근 유사 사업 수행사례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비계열사와 중소기업에 분리 발주할 수 있는 품목이나 공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품목이나 공사가 있을 경우 이를 분리한다.

제 19 조(구매 의뢰) ① 발주부서는 발주 판단 절차 완료 후 그 결과를 별지 제 1 호서식의 발주 판단서를 작성, 첨부하여 구매 의뢰한다. 단, 발주심의 위원회 상정이 예정된 투자사업 등 사전에 발주부서와 구매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한 경우 양 부서가 공동으로 상기의 관련 절차를 수행하여 발주 판단을 할 수 있다.

② 발주 판단서 작성 시 재활용 장터와 글로벌 공급사 DB 등의 확인 여부를 필수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 20 조(발주방안 확정과 구매 추진) 구매 부서는 발주 패키지 또는 발주 판단 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이를 최종 발주방안으로 확정하여 구매를 추진한다.

제 6 장 발주심의 위원회 운영 프로세스

제 1 절 위원회의 설치와 권한

제 21 조(위원회의 설치) 발주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업의 설비발주 경쟁력 확보 또는 공정한 발주 판단을 목적으로 계열사 자력 엔지니어링이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관련 부문 간 합동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한다. 단, 연속 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 최초 공사발주 시점에 심의한다.

제 22 조(발주심의 위원회 구성) ① 발주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지원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구매지원 그룹장, 실행사업부장(해당 계약)으로 한다.

② 제 3 의 독립기관은 공정거래주관부서장이 맡는다.

제 23 조(위원회의 심의 안건) ① 위원회는 계열사 자력 엔지니어링이 포함된 사업(5 억원 이상을 말한다)의 발주방안에 대해 심의하여 승인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대상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현황, 기타 중요 계약, 이미 승인된 계약의 이행 상황 등을 보고받아 심의할 수 있다.

제 24 조(위원회의 권한)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주요 내용, 계약방식, 거래상대방 선정기준,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접 심의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거래 당사자 선정의 적정성, 세부 거래 조건의 타당성, 수의계약 체결 사유 해당 여부, 비계열 독립 기업에 대한 직 발주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 또는 규정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부문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 절 발주심의 위원회 운영 절차

제 25 조(발주 패키지 작성) 심의대상 투자사업이 승인되면 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발주 패키지를 작성한다.

1. 발주부서는 사업수행, 경제성, 공기 등의 측면에서 발주 패키지를 구분하며 이때 제 16 조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공종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별도 패키지로 분리 발주할 것
2. 분리 직 발주로 분류된 품목과 공정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별도 리스트를 작성하여 구매의뢰 시 구매부서에 통보하며 구매부서에서는 이를 검증 후 패키지별로 적절한 계약 방법에 의해 계약을 추진할 것

제 26 조(발주 가이드에 따른 판단 기준과 절차) ① 발주방안 작성 시 발주 가이드에 따른 판단기준과 절차는 별표 1의 '발주 가이드'에 따른다.

② 발주부서 실무 책임자는 사전 직 발주 품목 또는 공종을 제외하고 각 패키지별로 발주 가이드에 근거하여 계열사로 내부 발주 또는 비계열 독립회사로 외부 발주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내부 발주의 경우 「계약지침(121101)」에 따라 다시 계열사 일괄 발주, 분할 발주, 컨소시엄 발주 등을 판단한다. 단, 해당 패키지가 제 11 조의 수의 발주가 가능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비계열 독립회사로 발주하는 경우 발주 가이드에 따른 판단 절차를 생략하고 발주 판단서에 수의사유만 기재할 수 있다.

제 27 조(위원회의 심의) 발주 초안 작성이 완료되면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에서는 발주 초안 작성내용에 대하여 발주 가이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패키지별 발주 방안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토론을 하여 수정, 확정한다. 이때 위원회에 참석한 공정거래 부서 참석자는 패키지별 발주 방안의 적정성과 공정거래 차원의 문제 유무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제기하여 위원들 간에 토론을 통해 개선 방향을 강구하도록 가이드를 제시한다.

제 28 조(위원회의 개최와 의결) 위원회 개최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하며 의결은 참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29 조(구매계약 체결) ① 위원회의 심의에서 확정된 방안에 따라 발주부서는 발주 패키지별로 구매부서에 구매의뢰를 하여 구매계약을 진행한다.

② 가격에 대한 적정성 검증은 계약금액에 따른 전결 규정에 따른다. 설비계약의 경우 5 억원 미만은 리더가, 5 억원 이상 10 억원 미만은 그룹장이, 10 억원 이상은 경영지원실장이 결정한다.

- 제 30 조(발주심의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는 사업 발주 판단 프로세스)** ① 발주부서는 사업수행, 경제성, 공기 등의 측면에서 발주 패키지를 구분하며 제 15 조에 해당하는 품목과 공종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별도 패키지로 분리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분리 직 발주로 분류된 품목과 공정에 대해서는 발주 부서에서 별도 리스트를 작성하여 구매의뢰 시 구매부서에 통보하며 구매 부서에서는 이를 검증 후 패키지별로 적정한 계약 방법에 의해 계약을 추진한다.
- ③ 발주부서 담당 리더는 대상 사업의 발주패키지 구분이 완료되면 발주 가이드에 따라 발주 판단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발주방안을 작성하며, 이때 중소기업 직 발주 품목으로 분류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소싱그룹을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주방안을 수립한다.
- ④ 외부업체를 대상으로 수의 또는 지명경쟁에 의해 발주하고자 할 경우 발주부서는 수의 또는 지명 검토 요청서를 첨부하여 구매부서로 의뢰하고 구매부서는 이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한다.
- ⑤ 구매부서는 발주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따라 후속 구매행정을 진행하며, 이 지침에 따라 분리 발주 시 성능보장을 위해 컨소시엄 계약을 할 경우 Leading Company 에 성능보장과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단, 발주방안이 이 지침 또는 회사의 구매 방침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구매 의뢰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 7 장 관련 자료의 보존

제 31 조(자료 보존 대상 계약) 구매부서는 심의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와 관련된 세부 자료를 해당 계약의 효력이 최종 만료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2 년이 경과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보존한다.

제 32 조(세부 자료 보존 대상) 세부 보존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 담당자, 최종 승인권자, 거래 상대방 측 계약 담당자 정보
2. 다음 각 목과 관련된 내부 검토 문건과 증빙자료
 - 가. 관련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 나. 거래 상대방 선정기준, 방법, 선정 결과
 - 다. 거래가격, 수량 등 세부 거래조건과 선정근거
 - 라. 통합발주 시 거래 상대방의 업무 수행내용과 업무 재위탁 내역
3. 계약 당사자 간에 유효하게 날인되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서명된 최종 계약서

제 33 조(자료 보존 방법) 구매 부서는 상기 자료 보존 대상 계약의 목록과 세부 보존자료 내역, 의무적 보존기간을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한다. 관련 자료는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보존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거래 상대방 선정지침 [별표 1]

발주 가이드(제 16 조, 제 17 조 관련)

1. 발주가이드 1 단계: 발주설비 아이템의 중요성과 계열사 보유역량을 고려하여 외부 발주 또는 계열사 발주 여부 결정



가. 해당 패키지에 대해 발주사 아이템의 중요성(이하 "중요성"이라 한다)과 수주사 보유역량(이하 "보유역량"이라 한다)을 High, Mid, Low의 3개 Grade로 평가하여 계열사 발주 또는 비계열 독립회사 발주 여부를 결정

1) 중요성: 발주단위의 질적 중요성과 양적 중요성에 대해 각각 High, Mid, Low의 3개 Grade로 판정하고 각각의 판정결과 중 낮은 결과를 최종 판단결과로 함(단, 핵심기술은 양적 중요성에 관계 없이 High로 판정)

가) 질적 중요성: High(보호해야 할 핵심기술), Mid(중요기술), Low(보편적 기술)

나) 양적 중요성: High(50억원 이상의 사업), Mid(10~50억원 미만 사업), Low(10억원 미만 사업)

다) 공사의 질적 중요성 판단은 다음 기준에 따름

- (1) High: 보호해야 할 핵심기술 포함 설비/SD 공사 또는 이에 준하는 공사
- (2) Mid: 중요기술 포함설비 관련 공사 또는 이에 준하는 공사
- (3) Low: 보편적 공사 또는 중소기업 발주로 분류된 공사

라) 중소기업 발주공사: 금속구조물/창호공사, 기계설비공사, 소방설비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2) 보유역량: 그룹사의 자력 수행능력과 원가 경쟁력에 대해 각각 High, Mid, Low 의 3 개 Grade 로 판정하고 각각의 판정결과 중 낮은 판정결과를 보유역량의 최종 판단결과로 함
가) 자력수행능력

- (1) High: 발주설비에 대한 핵심기술 설계능력 또는 수행실적 보유
- (2) Mid: 기술보유 외자사 등과 컨소시엄 또는 성능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협약서 보유 등 High 와 Low 이외의 경우
- (3) Low: 자력 수행능력 또는 수행실적 없음

나) 원가경쟁력: High(경쟁사 가격 이하), Mid(경쟁사 유사), Low(경쟁사 가격 이상)

다) 공사의 자력수행능력 판단은 아래 기준에 따름

- (1) High: 관련 핵심설비 또는 프로젝트의 공사수행 경험이 있는 경우
- (2) Mid: 관련 중요설비 또는 프로젝트의 공사수행 경험이 있는 경우
- (3) Low: 관련 공사 수행 경험이 없는 경우

라) 공사의 원가경쟁력 판단 시 공사규모 또는 성격에 따라 비교 대상 경쟁사를 선정하여 비교

예시) 대규모 프로젝트 공사의 경우 대형 건설사를 비교대상으로 함

3) 상기의 중요성과 보유역량의 매트릭스에 따라 아래와 같이 1 단계 발주방안을 판단

가) 비계열 독립회사 발주(외부 경쟁입찰): 중요성 Low & 보유역량 Low ~ Mid

나) 계열사 조건부 수의발주: 중요성 Mid ~ High & 보유역량 Low ~ Mid

- (1) 조건부 수의발주는 설비 또는 설비시공 일괄발주의 경우에만 적용하고 공사 단독발주의 경우 수의 발주로 함
- (2) 조건부 수의발주는 핵심기술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1 회의 독립적 수의계약 기회를 제공하나, 제한된 기회 내 역량확보 실패 시 차기에는 외부 경쟁으로 추진. 발주부서는 구매의뢰 시 역량확보조건을 작성하여 구매의뢰서에 첨부하고 준공 전 역량 확보 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구매부서로 통보. 구매부서는 조건부 수의부여 현황을 관리하며 역량확보여부에 따라 향후 발주방안을 판단

다) 계열사 수의발주: 중요성 Low ~ High & 보유역량 High

라) 중요성 Mid & 보유역량 Low 일 경우 계열사 또는 비계열 독립회사로 발주할 수 있는 중첩영역이므로 경쟁입찰을 우선으로 검토하되 보유기술과 발주 PJT 수행 경험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주부서와 구매부서가 조건부 수의 진행여부를 판단 가능하며, 경쟁입찰로 판단 시 필요한 제한조건을 설정하여 진행 가능(조건부 수의로 판단시 발주부서, 구매부서와 공급사가 협의한 조건부 수의 달성목표에 따라 진행). 발주부서는 사업수행후 달성조건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구매부서에 통보

마) 비계열 독립회사로 발주가 확정된 패키지에 대해서는 해당 소싱그룹을 우선 경쟁입찰 대상으로 검토하며 소싱그룹이 없을 경우 「계약지침(I21101)」에 따라 발주부서와 협의를 통해 전문 공급사를 중심으로 추천을 통해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의결과 계열사로 발주하기로 판단한 패키지에 대해서는 역량이 있는 계열사를 검토하고 자력 엔지니어링 로드맵에 그 사업이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최적의 계열사를 선정해야 함

다) 분할발주: 관리역량 High & 보유역량 High

나. 계열사 발주형태 판단이 완료되면 해당 패키지 내에서 직발주 품목 리스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추가적으로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 기업 등에 분리 발주할 아이템이 있는지에 대해 협의하고, 추가 분리품목이 없는 경우 관련 사항을 명기하여 발주방안을 작성. 이 때 발주초안이 작성되면,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과 전문위원들에게 공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이 지침에 따라 분리 발주시 성능보장을 위해 컨소시엄 계약을 할 경우 Leading Company 에 성능보장과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을 검토 가능

■ 거래 상대방 선정지침 [별표 2]

비계열사/중소기업 직발주 품목(제 14 조 관련)

1. 직발주 가능품목

구분	NO	직발주 품목
공사	1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2	기계설비공사
	3	소방설비공사
	4	전기공사
	5	정보통신공사
기자재	6	계통연계형 PV Inverter
	7	무대장치
	8	실리콘 태양광 모듈
	9	일반제어반
	10	제어성 Field Instrument
	11	Hydraulic Valve
	12	Pneumatic Valve
	13	고,저압반
	14	기계:집진기(Bag Filter, 소형)
	15	변압기(154kV 미만-Mold Type)
	16	변압기(154kV 미만-Oil Type)
	17	비상발전기(플랜트용)
	18	Crane(50ton 미만)
	19	Motor
	20	UPS System
	21	집진기(Bag Filter, 소형)
	22	초고압 변압기(154kV 이상)
	23	초고압 Cable-154 kV 이상
	24	Crane(100ton 이상-400ton 미만)
	25	Crane(400ton 이상)
	26	Crane(50-100ton 미만)

27	Gas & Oil Burner
28	Fan&Blower(1000kW 미만, 500Kw 이상)
29	열교환기(비판형, 300,000Kcal/Hr 이상)
30	열교환기(판형, 300,000Kcal/Hr 이상)
31	유공압 실린더(단품 1 억원 이상)
32	중소형 원심펌프(350 Kw 이상)
33	Bearing(제작사, I/Diameter 1000mm 이상)
34	Conveyor Belt(100m 이상)
35	Hoist & Chain Block(Chain Block 제외)
36	Magnetic Separator(발주단위 10 개 이상)
37	Crusher Equipment
38	Feeder & Screen
39	Filter Press 탈수기
40	Screw Compressor (150kW 이상)
41	Tong
42	Turbo Compressor
43	Reciprocating Compressor (150kW 이상)
44	Special Expansion Joint (Diameter 3,000mm 이상)
45	집진기(EP)
46	집진기(Bag Filter, 대형)
47	폐수처리설비(플랜트용)
48	Cooling Tower(플랜트용)
49	산회수설비
50	Auto Door
51	일반감속기 (500kW 이상)
52	가변형 유체 커플링 (500kW 이상)
53	Reciprocating Compressor (150kW 이상)
54	약품투입설비
55	일반에어컨
56	Elevator (산업용)
57	FRP Tank (10m ³ 이상)
58	Rubber Lining Tank
59	PTFE Lining Tank
60	Slag Pot

2.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 발주 품목

가. 장애인 기업 : 수배전반 (10kV 이하)

나. 사회적 기업 : 스틸하우스, 스틸 Grate 등

■ 거래 상대방 선정지침 [별지 제 1 호서식]

발주판단서

(19. 12.)

사업건명			예산			납기
발주판단 내역	항목	판정	사유			
	1 단계 종합	수의, 조건부수의, 중첩, 외부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 보유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력수행능력 - 원가경쟁력 - 판단 ○ 발주사 아이템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적중요성 - 양적중요성 - 판단 	H,M,L H,M,L H,M,L H,M,L H,M,L H,M,L	계열사 자력수행경험 보유 경쟁사 가격 이하 H, H 중 낮은 평가 적용 중요기술 적용 사업 10 억원 이하 사업 M, L 중 낮은 평가 적용	중요성 High Mi Lo	계열사 조건부 수의계약 승점영역 외부 거래 Low Mi High 계열사 보유역량	계 열 사 ✓
2 단계 종합	분할, 컨소시엄, 일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사 관리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단순성 - 관리경험 - 판단 	H,L H,L H,L	복합설비로 고도의 제어필요 복합설비 경험이 많지 않음 L, L 중 높은 평가 적용	관리 역량 High Mid Low	컨소시엄 분할 발주 일괄발주 Low Mid High 계열사 보유역량 (1 단계 판단결과 적용)	분 발 주 ✓	
발주방안	<u>수의 일괄발주</u> - 대상: - 사유: "수의발주 사유 간략히 기술"(「계약지침(21101)」, 모범기준의 수의사유)					
검토자	작성자 : 000 사업팀 확인자 : 구매지원그룹	○○○ (서명) ○○○ (서명)				